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트다이내믹코리아5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1.

- **정정 사유** : (1) 환매수수료 삭제  
 (2)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
 (3)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서식개정에 의한 정정	<u>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3.3.28. 일괄신고서 효력발생</u> <u>2013.4.22.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 <u>2015.7.1. 환매수수료 삭제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 5. 31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2)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	2)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
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<u>3) 환매수수료</u> <u>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 (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</u>	<u>&lt;삭 제&gt;</u>

	<p>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 일까지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 자산탁재산에 편입합니다.</p> <p>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	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	<p>환매수수료 :</p> <p>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	해당사항 없음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2015.4.21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③ 세액공제(2014. 1. 1. 부터): 연 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가입자 추가부담금(DC, 기업형 IRP)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	<p>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터): 연 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
1. 재무정보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2015.4.21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2015.4.21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2015.4.21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의무해지</p>	법 개정사항 반영	<p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p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	소규모펀드	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

<p>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</p>	<p>처리방안 기재</p>	<p><u>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 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 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 해야 합니다.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</p>	<p>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</p>	<p><u>③회계감사</u>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 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 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</li> <li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/ul>